

2021학년도 1학기 미래캠퍼스 학부생 입대휴학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 이후 입대 예정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1. 5. 17.(월)이전 입대할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 5. 18.(화) 이후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

※ 단, 학기 2/3선(5월 17일) 이후에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와 성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휴학 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학사에 관한 내규 제25조, 제36조)

■ 1. 신청기간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휴학 신청 자격	수업료 반환
2021. 2. 1.(월) 10:00~ 3. 15.(월) 17:00	2021. 3. 15.(월)까지 입대하는 자는 1학기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단, 2021. 3. 15.(월)까지 입대하지 못하는 자는 일반휴학을 2021. 3. 15.(월)까지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	수업료 전액
2021. 3. 16.(화) 9:00~ 5. 17.(월) 17:00	2021. 3. 16.(화) 이후 입대하는 자는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하며,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적용
2021. 5. 18.(화) 9:00~ 7. 30.(금) 17:00	2021. 5. 18.(화) 이후 입대하는 자는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하며,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2021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라도 입대휴학 신청은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만 가능	수업료 반환 없음

■ 2. 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

가.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입대휴학] 신청 ⇨ 증빙서류 등재(입영통지서 첫 장, 2MB이하)

나. 승인방식: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된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다. 입대휴학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일반휴학과 승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1)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PDF, 한글 파일 형태로 등재 가능
- 2) 증빙서류는 2MB 이하일 경우에만 등재 가능

■ 3. 수업료 반환

휴학승인시점 (입대일 기준)	수업료 반환률	비고
2021. 3. 15.(월) 17:00 까지	전액	
2021. 3. 31.(수) 17:00 까지	수업료의 5/6	
2021. 4. 30.(금) 17:00 까지	수업료의 2/3	
2021. 5. 17.(월) 17:00 까지	수업료의 1/2	학기 2/3선

-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 승인일로 부터 업무일 기준 약 10일
-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 1)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 2)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복지처에 방문(학생회관 235호, 033-760-2125~6)하여 장학금 취소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4.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 가. 학기 2/3선일(2021. 5. 17.) 전 입대
 -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해당 학기는 입대 휴학 학기로 인정(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나. 학기 2/3선일(2021. 5. 17.) 후 입대
 -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함. 단,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담당교수와 확인해야함**
 -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
- 다. 관련규정: 학사에 대한 내규 제 25조
 대학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 5.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

- 가. 학기 2/3선일(2021. 5. 17.) 전 입대: 해당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나. 학기 2/3선일 후 입대: 해당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 다.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입대휴학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라. 일반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당초입학).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을 넘지 못함
- 마. 휴학학기 수 조회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자료조회]

■ 6.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

- 가.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취소원을 원주교무부(학적)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 나.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재학 또는 일반휴학)로 환원됨
- 다. 재입대가 확정되면 [학교홈페이지 ⇨ 학사지원 ⇨ 각종신청서양식모음]에서 ‘입대휴학원서’를 내려 받아 입영통지서와 함께 교무부(학적)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음

■ 7. 유의사항

- 가. 신입생, 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 (캠퍼스내/간 복수전공은 해당사항 없음), 재입학생의 첫 학기에는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나. **2021년 8월 졸업신청자는 교무부(학적)에서 졸업신청 취소를 해야 휴학신청 가능**
- 다.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신청 가능. 문의: [문의: 원주학술정보원 3층] (033-760-2510)
- 라.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

해야 함

- 마.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시기: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학기 등록금 완납 전까지
- 바. 복학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 등록금 완납 전까지 교무부(학적)에서 복학예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사. 입대휴학 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 8장, ☑학사에대한내규 제 6장, 제 8장 등
대학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 아. 휴학 관련 주요 문의처 (033-760-해당부서)
 - ☎ 등록금 납부 및 수업료 반환 : 재무부(2149)
 - ☎ 장학금 : 학생복지처(2125~2126)
 -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5430)
 - ☎ 예비군 관련 : 예비군연대(2595), 전역 후 복학승인된 학생의 예비군 전입은 자동 처리,
단 전역전 복학허가자는 개별 신고바람.
 - ☎ 수업, 성적 : 원주교무부(수업)(2165)
 - ☎ 졸업신청 및 연기, 전공 등 : 원주교무부(학적)(2156)
 - ☎ 휴/복학 신청관련 : 교무부(학적)(2158)
 - ☎ 질병휴학관련 : 건강관리센터(2641)
 - ☎ 창업(준비) 휴학을 위한 서류준비 및 승인절차 : 창업교육센터(5276)
- 기타 학사행정 FAQ 웹사이트 경로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행정 ⇨ 휴학/복학